

# 安山市小河川占用料 및 使用料徵收條例案

의안 번호	455
----------	-----

제출월년월일 '95. 11.

제 안 자 : 안산시장

## □ 提案事由

- 소하천의 체계적 정비촉진 및 이용증진을 위해 제정된 소하천 정비법이 '95. 7. 6부터 시행되어 동법제22조에 의거 유수 및 토지의점용료, 사석·모래·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등 점용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함.

## □ 主要骨子

- 점용료등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안 제2조)
- 부담금 부과대상자등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 허가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 (안 제15조)
- 점용료, 부담금, 허가수수료등 감면에 관한 규정 (안 제3조, 제11조)

## □ 制定根據

- 소하천 정비법 제 22 조
  - 제5항 - 점용료등과 부당이익금 및 허가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제의 수입으로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및 점용료등과 허가수수료의 감면대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參考事項

### ○ 입법예고

- 예고기간 : '95. 10. 27 ~ '95. 11. 16 (21일간)
- 공고장소 : 시청게시판, 동사무소게시판
- 의견제출사항 : 없음

### ○ '95 소하천 점용허가 현황

구 분	필지	면적 (m <sup>2</sup> )	금액 (천원)	비 고
계	13	6,026	656	
농 작 물 경 작	9	4,792	71	
관 로 개 설	2	552	37	
진입로 (공작물)	2	682	548	

### ○ 시(군)소하천점용및사용징수조례제정준칙(경기도) : 별첨

### ○ 경기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 별첨

## 안산시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1조, 제22조,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사력등 소하천내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한다) 등과 부당이득금, 수익자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상한다.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22조제2항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부당점용기간에 대한 당해년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 (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4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사력등 소하천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농경을 목적으로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징수) ①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때와 기타의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부담금 부과대상자등) ①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하천정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토지공작물 또는 시설(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공사 시행공고(이하 '공고'라 한다) 당시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1. 소하천의 신설·개축 및 보수

2. 소하천공작물의 신설·개축·변경·제거

②제1항의 경우에 공고당시의 소유자가 당해 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음이 없이 당해 토지등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때에는 당해 승계인에게 부과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공고 당시의 소유자와 그 승계인(공사완공후 1년을 경과한 날 이후의 승계인을 제외한다)이 모두 현저한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승계인에게도 부과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있어 현저한 이익이라 함은 공사 준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에 있어 토지등의 시가가 공고 당시의 시가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받게되는 이익을 말한다.

제8조 (부담금 부과액의 결정등)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대상자에게 부과할 부담

금은 현저한 이익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정하되, 그 부담금의 부과 총액은 당해 공사에 소요된 비용 (이하 공사비 라 한다)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2명이상인 때에는 당해 부과금액을 각 수익자가 받은 이익액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과한다.

제9조 (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등의 가액조사) 시장은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공사를 이행하기 전에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될 토지등의 가액 및 공사준공후 1년이내에 당해 부담금을 부과할 토지등의 가액을 각각 조사한다.

제10조 (부담금 부과기준등) 부담금은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토지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공사후 1년 6월이내에 부과한다.

제11조 (부담금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토지등의 소유자가 당해 공사비의 전부를 토지 또는 노역으로 부담한 때에는 면제
2. 토지등의 소유자가 당해 공사비의 일부를 토지 또는 노역으로 부담한 때에는 이를 금전으로 환산한 액만큼 감면
3.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때에는 면제

제12조 (납입통지) 시장은 부담금을 결정, 부과한 때에는 부담금의 종류, 금액, 납입장소 및 납기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분할납입) 부담금액이 많아서 일시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당해 수익자에 대하여 연리5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납기일로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일내에 분할납입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강제징수) 점용료 및 부담금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 할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 징수한다.

제15조 (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허가 수수료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6조 (이의신청) 점용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등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 점 용 료 등 산 정 기 준 표

[ 별표 1 ]

구 분	산 정 기 준
1. 공작물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li> </ul>
2. 토지 (소하천부지)의 점용	<p>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의한 인근 유사지 농지소득 금액의 5/100 다만, 미식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0.8/100</p> <p>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p> <p>다.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p> <p>라. 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p>

구 분	산 정 기 준
	<p>마.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p> <p>바.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 /100</p>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	<p>○ 제1항에 준한다.</p>
4. 유수의 점용	<p>가. 전기사업 연액 <math>m^3/sec</math>당 200,000원</p>
5. 지하의 유수채취	<p>나. 공업용수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 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단위수대 적용</p> <p>다. 농업용수 (내수면적용수 포함) <math>0.05m^3 \sim 0.5m^3/sec</math>까지 연액 10,000원 <math>0.5m^3/sec</math>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p>
6. 배수 (주수)	<p>○ 제4항의 기준에 준한다.</p>
	<p>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4항 나목의 1/3 ※ 월 <math>10,000m^3</math>미만은 징수하지 아니 한다.</p>

구 분	산 정 기 준
	<p>나. 기타용수의 배수</p> <p>기타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할때 농업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p> <p>제4항 나목의 1/4</p> <p>※ 월 10,000m<sup>3</sup>미만은 징수하지 아니 한다.</p>
<p>7. 토석 · 사력의 채취</p> <p>8.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하천 산출물의 채취</p> <p>9. 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장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지사가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 · 사력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5/100</li> <li>○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항,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항에 준하여 결정 한다.</li> <li>○ 토지가격의 5/100</li> </ul>

구 분	산 정 기 준
10.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	○ 인근토지의 임대료 추정액의 20/100
11. 기타의 점용 및 사용	○ 전 각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 ※ 비 고

1. 토지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점용료등 및 허가수수료 감면 기준표**

[ 별표 2 ]

감 면 대 상	감 면 율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농지개량 조합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 개축 허가 토지의 굴착, 성토, 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기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	100 %
2.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	100 %
3. 주민 자력에 의하여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	100 %
4. 천재지변등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된 경우	100 %
5. 기타 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위한 것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100 %

## 허가 수수료 요율 표

[별표 3]

구 분	수수료 액	허가 기준
소하천공사의 허가 공작물의 신, 개축허가 토지의 글착, 성토허가 토지의 형상변경허가	허가시 공사비의 1/1000 (용지비 및 보상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하천정비계획상 지장여부</li> <li>• 이해관계인의 동의여부</li> <li>• 공사수행능력</li> <li>• 소하천부속물을 관리청에 귀속조치함에 따른 동의여부</li> <li>•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적정 여부</li> <li>• 구조물 공사가 관계 설계 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li> <li>• 2년 이상 점, 사용료 체납시 허가취소</li> </ul>
토석, 사력등 소하천산출 물의 채취허가	점용료의 1/1000	
기타 소하천의 점용(식물 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를 제 외) 허가	점용료의 1/1000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및 농지개량조합 이 받는 허가	없 음	